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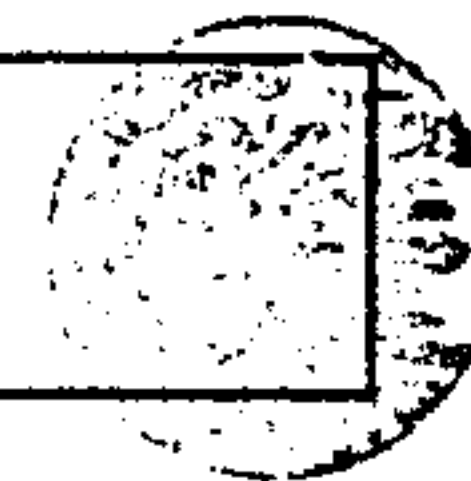
의 안 번 호	제 28 / 호
의 결 년 월 일	2001년 2월 20일 제 105 회

의 결 사 항
월안가결

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

제 출 자	보 은 군 수
제출년월일	2001. 2. 13 .

기획감사실장심사필



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6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1. 2. 13.

제 출 자 : 보 은 군 수

(소관부서 : 환 경 과)

1. 제안이유

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가 1995년 6월 10일에 개정공포 되었으나 금번 개정할 보은군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통합 시행하게 되어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행정규제개혁 이행과 보은군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통합 시행하게 되므로 존치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신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4. 근거법령 : 붙임

붙임 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~~조례~~폐지조례안 1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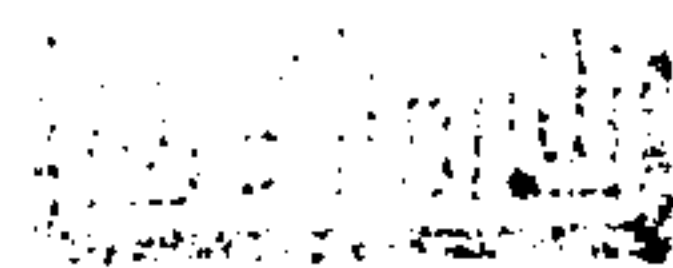
보은군조례 제 호

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

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(조례 제1426호, 1995. 6. 10)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법명 :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

第16條 (公衆化粧室의 設置 및 관리) 市長·郡守·區廳長은 多數人이 通行하거나 모이는 場所에 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化粧室이 設置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衆化粧室을 設置하고 이를 衛生的으로 유지·管理하여야 한다. [改正 97·3·7]

법명 :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

제35조 (공중화장실의 설치·관리기준)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전체면적은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, 대변기 11개(남자용 3개, 여자용 8개)이상, 소변기 5인용이상을 설치할 것. 다만,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등을 설치할 수 있다.
2. 대변기의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이상, 긴 변이 115센티미터이상(양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센티미터이상)일 것
3.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. 다만, 상·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

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.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,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할 것
5.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
6. 대변기의 칸막이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

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유지·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
2.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할 것
3.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·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·번식을 방지하도록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 주 3회이상,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주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

